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일반계고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안 효 덕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일반계고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지도교수 원 효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안 효 덕

안효덕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2월 26일



주심 교육학 박사 장 한 기(인)

위원 공학 박사 박 중 운(인)

위원 교육학 박사 원 효 현(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배경 및 목적.....	5
2.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 및 역할.....	9
3.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15
4. 선행 연구 분석.....	18
III. 연구방법.....	34
1. 연구의 대상.....	34
2. 연구의 도구	34
3. 자료의 분석.....	36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7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대표성.....	37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46
3.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50
V. 요약 및 결론.....	77
참고문헌.....	80
설문지	83

표 목 차

<표 II-1> 프랑스의 학교행정위원회의 구성.....	23
<표 II-2>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교.....	26
<표 III-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33
<표 III-2> 설문지 구성 내용.....	34
<표 IV-1>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 자격.....	37
<표 IV-2>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자격.....	39
<표 IV-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자격.....	41
<표 IV-4>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거운동 적정 기간.....	42
<표 IV-5>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43
<표 IV-6> 학교운영위원 중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	44
<표 IV-7>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45
<표 IV-8>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의 학교경영 반영 정도.....	46
<표 IV-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절성.....	48
<표 IV-10> 학교운영위원회의 적절한 구성 비율.....	50
<표 IV-11> 교원위원의 적절한 혜택 부여 방안.....	51
<표 IV-12>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적절한 혜택 부여 방안	54
<표 IV-13> 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연수분야.....	55
<표 IV-14>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전환해야 하는 분야.....	57
<표 IV-15> 학부모 및 교사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 제고 방안.....	58

<표 IV-16>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구성원.....	60
<표 IV-17> 안전 심의에 대한 논의의 주도적 역할 구성원.....	61
<표 IV-18>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정도.....	63
<표 IV-19> 안전 처리 및 심의 방식.....	65
<표 IV-20>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66
<표 IV-21> 안전의 심의 결과 공개 방법.....	68
<표 IV-22>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69
<표 IV-23> 운영위원회의 학교 경영 참가 권한 부여 정도.....	71
<표 IV-24> 운영위원들의 대표성 부여 방안.....	73



A Study on Revitalizing the school councils of Academic High
Schools

Hyo-Deok A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methods to activate the school councils of high schools. To complet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eachers' perception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peration, and accomplishments of the council.

Coinciding with the objective, research further analyzed three specific study problems. First, what ar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authenticity, expertise, and election process of the council members? Second, what are the opinions concerning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council? Third, what are suggestions to further reactivate the council?

To identify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 survey consisting of 24 questions was designed by the researcher with the assistance of an advisor. 400 surveys were distributed to 20 academic high schools in Busan, of which 360 were returned.

To revitalize the school councils, survey results suggested the following:

- (1) Members of the council who are teachers need to be more specialized for their job and council participation should be regarded as workload; therefore a reduction of overall workload is required.
- (2) Council members who are teachers should assume more leadership roles in the running of the council.
- (3) Council members who are parents and community leaders need to receive financial incentives, which would assist and motivate greater involvement.

Although this study is restricted to specific academic high schools in Busan, the suggestions generated can be applied to all high schools. Further suggestions demonstrate results are applicable to all level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identify effective solutions to activate all school management council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어 왔고, 교육소비자인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가 학교에 대해 요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제가 1991년 실시된 후,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95년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인사, 동문회인사 등을 주요 구성으로 하여 발족되어, 그 해 355개의 시범학교 실시과정을 거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체제를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한 제도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직접적인 계기는 5·31 교육개혁안 중 “초·중등학교의 자율적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였다. “다수 교육주체들의 능동적인 교육 공동 참여”와 “민주적인 교육 권한의 공유”라는 두 축을 전제로 학교공동체 구축과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지금까지 관료적인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 하에서 폐쇄적 운영을 해 오던 학교를 학교구성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개방하여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7년에 전국의 국공립 초 중등학교에 6,476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에는 읍·면 지역으로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법령의 상당부분이 개정되어 제도적 허

점이 보완되었다. 그러나 시행 12년째에 접어든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동안의 운영에 대하여 다양하면서도 엇갈리는 평가가 있다. 학교운영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것에서 보다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학부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과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장만을 반영해 왔다. 즉, 공교육은 중앙으로부터 하달된 ‘교육과정’과 ‘교육운영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용역 배달 체제’의 성격을 띠어 왔다.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에 익숙한 교육소비자는 자신들의 교육적 요구를 정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학교의 민주화와 자율성 증진, 학교교육의 효과성 제고와 지역 특성 고려 등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제한한다는 측면, 그리고 학교 내에 다양한 갈등구조와 대립을 야기시키는 불필요한 기구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그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재해 있는 많은 저해 요인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행정 당국의 인식 및 지도력 부족이나 운영위원회의 소양과 전문지식 부족, 상급 교육행정 기관의 간섭과 규제, 학교장의 폐쇄적 학교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제한된 기능과 권한, 학부모와 교사와 지역인사의 무관심과 의식 부족, 구성원간의 갈등, 위원장의 독단과 무관심, 무소신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저해요인들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과 운영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의 본래 취지인 자율적인 단위 학교 중심의 민주적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당사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과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요구가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내 일반계 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와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실태와 기능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상기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선출방식 및 전문성에 대한 일반계 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권한에 대한 일반계 고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의 20개교의 일반계고등학교(국·공립 및 사립)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만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배경 및 목적

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배경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가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 집중적 교육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교육행정체제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자치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행정체제는 관료적이고, 권위적이며, 지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자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직된 관료주의적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민주화, 분권화, 자율화, 주민 통제 등의 지방자치의 원리가 단위학교 수준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체제에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책임지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체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단위 책임 경영체란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과 철학을 바탕으로 조직관리, 인사, 재정,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행사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학교경영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경영체제는

학교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함께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장치의 전형적인 사례가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들인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되어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과, 1996) 학교운영위원회는 근본적으로 교육자치제 시대에 단위학교의 자율 자치를 촉진하고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들의 건전한 교육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촉진하고 주민통제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교육자치제의 궁극 목표인 단위학교를 자치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즉, 교육 자치는 하고 있으면서 단위학교가 학교경영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책임 경영의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학교 경영과 관련된 많은 권한과 책임이 아직도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교육청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수혜자이면서 납세자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적 식견이 높아지고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 주장과 학교교육 참여 욕구가 강해지면서 이들의 욕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교육을 위한 정책 결정이나 학교운영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공식적인 학부모 단체인 학부모회의 경우 대부분의 기능이 주로 재정적인 후원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기타 학부모 단체와 교사 단체들도 아직은 그 기능이 제한적이고 수동적이며 임의적이고 비체계적인 교육 참여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그 결과 학교운영의 비민주화와 비능률성이 누적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

어왔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이며 활성화된 방식의 학교교육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방안으로 단위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교육개혁위원회는 그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6.).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가 미흡하여 학교 단위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지향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이다. 교육자치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단위학교의 자율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의 기본 원리인 주민 참여와 통제 즉, 학교구성원과 지역 주민의 학교운영 참여가 필수적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간의 학교의 의사 결정은 교장이나 소수의 의견에 좌우되어 왔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운영의 책무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자치 기구라는 것은 자율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즉,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며 개별 학교 수준에서 달성해야할 최소한의 교육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운영체제가 되어야한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열린 학교운영을 하기 위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정착되면 학교 운영 상태가 모든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에 공개되어 폐쇄적인 학교운영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많은 문제와 부조리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 및 역할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자치제의 구현과 단위 학교 자율경영체제 구축 학교공동체 구축과 같은 교육 이념적 요인들이 관련되지만 구체적으로 보다 직접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논의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이 포함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는데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했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초·중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폭이 확대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구조를 보면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국·공립은 의무, 사립은 자율)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 학교발전 기금 조성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칙, 위원의 선출 방법, 운영위원회의 심의,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서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소규모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여부,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 운영 여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는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순수 심의기구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심의기구는 법령으로 정해진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집행해야 한다. 그래서 만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장이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령으로 규정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의 길잡이”. 1998.).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적 필요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학교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그리고 학교교육 활동의 주체인 교원들이 학교경영 과정에 동참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학교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공동체로서 단위학교 기관으로 학교의 교육행위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지닌 구성 집단들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의사 결정 기구로서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이 ‘자율과 참여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학교 공동체 구축’이라는 ‘교육적 이상’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추출될 수 있다(강무섭,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연구”. 연구보고 95-1. 한국 교육개발원. pp. 4-5.). 초·중등학교의 실제 운영을 보면 학교 자율 자치나 의미 있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초·중등학교들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 부족과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 참여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단위 학교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경직된 규제에 묶인 획일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자질과 창의성이 제대로 배양될 수 있는 여건 또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의 의의는 위원회가 이러한 현안 교육문제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교육운영체제로부터 개별 학교의 자율과 책무성이 중심이 되는 참여식 자율 교육 운영체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학교 관련인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운영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육 수요자가 교육의 질을 판단하게 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직원 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교육운영체제인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동참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교육자치의 구현을 통해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단위학교가 단순히 교육기능을 집행하는 기구로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자율 경영 단위로서 새로운 참여 자율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재량권을 공정한 절차와 관련 집단의 다양한 참여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학교공동체로 성숙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학교 자치는 학교 구성원인 교사 및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고 학교 교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분명히 하여 책무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교원의 전문적, 협동적 체제로 전환하여 학교의 자율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자치에 근거한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는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 담당자들이 학교 운영과 교육에 대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단위학교가 조직관리, 인사, 재정, 교육과정의 운영에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여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학교 경영체제를 의미한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은 학교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 의욕을 높여 조직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영방식으로 이러한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 32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열 가지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음의 열 가지 심의 사항은 꼭 심의해야만 한다.

- ① 학교 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⑤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
- ⑥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⑦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⑧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⑨ 학교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⑩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밖에도 새로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청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개정되었고 1988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선 방식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2) 교사의 역할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의사 결정과정에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 참여적 의사는 의사 결정사항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다. 참여적 의사 결정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경영의 요건으로 한 개인이 결정하는 데 부딪히는 한계를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단이다(한국교육행정

학회. 학교·학급 경영론. p. 105.).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는 교사 자신의 교수-학습 활동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학교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에 대한 헌신적인 기여와 책무성에 대한 인식 증대, 교직에 대한 만족도 증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 제약, 관련 업무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및 관심도, 책무성의 문제 등과 같은 과업의 성격 등의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상계서. pp. 47-50).

(3) 학부모들의 역할

학부모는 학교교육을 결정짓는 관련 변수의 하나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다양한 세력 중 매우 중요한 세력의 하나이다. 학부모는 학습 활동의 주체인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행사를 대행하는 교육권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는 당연한 권리요 의무가 된다. 학부모의 교육 의무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의무를 이행할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에 대하여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에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강인수 외. 교육법론:교육행정학 전문서8. 서울:도서출판 하우. 1995 p. 81.).

그러나 다른 한 편 교육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학부모가 결정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교육권의 침해이며 월권이라고 보는 관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와 교원의 교육권은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관계라는 차원에서 조율되고 교류되어야 할 부문으로 남게 된다(신정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학부모 위원과 교육사위원의 의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 12.).

3.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구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구성 관련 사항을 보면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회원 정수 및 구성 비율에 있어 일반계와 실업계의 경우를 구분하여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을 일정 비율에 의해 선출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출관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진행 등을 담당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첫째,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의 선출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는 경우이고 둘째, 학부모위원 선출과 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분리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경우이다. 선출시기에 있어서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회기 개시 10일 이전에 지역사회위원은 회기 개시 전일까지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세와 임무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로 위원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 학교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보면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기 및 회의 소집에 있어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직위원 $\frac{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위원에게는 회의 조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 시 또는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회의 개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회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특별한 회의 조건이 없어도 월 1회 이상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회의 일수는 총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안건의 발의 처리에 있어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frac{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 처리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되며 학교장이 재의 요구한 사항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frac{2}{3}$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회의 운영은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 답변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고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 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는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학급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와 교내외 봉사활동 및 학생 지도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 현재 자생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어머니회, 사친회 등을 산하 단체로 흡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 요청 시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회기 종료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경비는 학교 운영 지원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 하는 초등학교는 교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하나 기본적인 운영사항은 상기와 같은 세부 규정들에 의거하여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4. 선행 연구 분석

가. 선행연구의 내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실증적인 조사 결과를 분석,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학교운영의 민주화, 투명성, 책무성강화, 의사결정으로 나누어 그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운영위원회를 보는 시각이 운영위원 경험 교사와 비 경험 교사 간에 차이가 많이 있었으며 학교운영위원 경험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반면에, 비 경험 교사들은 그 성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것은 그 결과가 아직까지 전체교사들에게 널리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최장명, 1998.).

교육 수혜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과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의 제도적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재정적 확보를 위한 기부금제 활성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관리, 운영 등과 같은 교육적 요구를 추출하였다(장경숙,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율적 학교 운영 방안” 대구 효성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 또는 심의 및 자문기구가 바람직하며 회의 운영, 협의 안건 선정, 결정사항 반영 등의 문제를 제대로 정한다면 학교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운영위원들이 학부모나 교사 전체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추출하였다(노재원,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학부모의 요구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의 학교 경영에 대한 감시 내지 견제 기구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최재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7.). 학교운영위원회는 분명 필요하고 진일보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성패는 사람과 운영에 달렸으므로 학교장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고 지원해 주는 기구로 정착되어야한다고 분석하였다.

2)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례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 프로그램 중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학교단위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각국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자치기구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그 유사형태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 확보와 구성원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어, 태동기를 지나 정착기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미국은 1980년대 들어서 경쟁국들의 도전을 받아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생산성과 무역 및 재정적 위기가 도래하면서 국가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가적 위기를 교육력의 강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었다.

1991년 부시 정부는 21세기를 향한 교육 개혁안인 “미국 2000 : 교육 전략(America 2000 : An Education Strategy)”를 발표하여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유능한 교원의 확보 등 교육 개혁

의 일환으로 학교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구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인 윤곽이 대동소이하므로 워싱턴 주 소재의 교육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인 학교장(당연직 위원), 정규교사 이외에 임시교사를 포함한 교원위원, 행정직원과 고용원도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참여가 보장되고 있으며, 학부모위원, 학교 후원기업 대표 등의 지역인사위원, 학생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정수는 교육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12~16명인 경우가 많다.

상임위원(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은 본인의 지원이나 동료 교직원들의 지명에 의하여 후보가 된다. 교원위원 또한 본인의 지원이나 동료 교직원들의 지명에 의하여 후보가 되고, 후보자 지명은 6월부터 시작되는데 9월에 실시되는 전체교사 또는 전체 교직원의 총선거에서 교원위원이 선출된다.

학부모위원은 본인의 지원이나 다른 학부모가 추천한 후보자 중 9월 총선거에서 학부모들의 투표에 의하거나 학교에 설치된 별도의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선출된다. 지역위원은 관심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학교장이 임의로 2명을 선정하고, 교육감이 1명을 지명한다. 학생위원도 교직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과 마찬가지로 9월에 총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 각 1인 및 간사 1인을 선정한다. 위원 중 누구라도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학교장은 예외로 한다.

특별한 임무를 위해 위원회 안에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최소 1인의 운영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학부모나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참여가 개방된다. 미국에서 학부모가 학교운영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는 학부모 자문회(PAC : Parent Advisory

Council), 학부모-교사 협의회(PTA : Parent-teacher Association), 학교 후원회(BC : Booster Club) 등이 있다.

(2) 영국의 학교운영 위원회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1902년 및 1944년 교육법에 의해 설치 · 운영되고 있다. 1986년 교육법에 의해 위원들은 교육과정, 성교육, 학교시설물 관리 등과 관련된 특별한 의무를 갖게 되었고, 학부모에게 연례보고서를 송부하는 의무도 갖게 되었다. 1994년 1월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인체가 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이나 결정은 위원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전체, 즉 법인에 귀속하게 되었다.

영국의 학교관리 기관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School Governing Body)와 학교장이 있는데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운영권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다. 교육법에서는 각 학교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인사와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교장, 교사, 직원, 학부모, 지역교육청 인사 및 이들에 의해 임명된 인사, 사업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인사 등 다양한 임명위원 또는 선출위원들로 구성된다. 또한 회의를 주선하고 의사 진행, 법적인 자문을 해주는 서기가 있다. 위원의 수는 학교규모(학생 수)에 따라 9~19명으로 구성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교원위원은 교사들에 의해 선출되며 재 선출이 가능하다. 교원위원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원직도 상실되지만, 학부모 위원은 임기 중 그 학교의 학부모 자격을 상실되지만, 학부모 위원은 임기 중 그 학교의 학부모 자격을 상실하여도 잔여 임기 동안 위원직이

유지되며 원한다면 사임할 수도 있다. 지역교육청 임명위원은 언제든지 교육청에 의해 해임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선출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교육청임명위원의 2/3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다. 이 위원들 중에는 그 지역의 산업체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위원 임기는 4년이다.

매학기 첫 회의 시 위원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단, 학교에 고용된 위원은 의장이 될 수 없다. 의장은 교장과 함께 직면한 학교 현안 문제를 공동대처하는 실질적인 지원 인사가 된다. 특히, 의장은 학생, 학부모, 임원들이 교육 활동에 해를 끼치는 정책을 연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독일의 학교운영위원회

독일에서는 교장이나 교감도 법적으로는 교사와 동일한 신분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단위학교자치경영의 3대 중심축으로 학교협의회, 교사협의회(Lehrerkonferenz), 학부모협의회를 설치하여 공동 책임 및 협력을 촉진하는 학교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법에서는 학교 운영과정에 있어서 상호 협력이 요구되는 ‘학교장’의 임무, ‘교사협의회’의 임무, ‘학교협의회’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협의회는 최소한 14명의 교사가 있는 모든 학교에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7학년부터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물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대표의 수가 줄고 학생대표의 수를 증대시켜 참여식 의사결정체제 본질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구성상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장은 학교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학부모협의회 의장은 의장대리가 된다. 학교 협의회에는 교사대표 6명, 학부모대표 2명, 학생대표 3명이 참여한다. 다만 학생회가 없는 경우 학생 대표 없

이 학부모 대표 5명만이 참석하며, 학부모 협의회가 없으면 일반 학부모 대표 6명이 참여하게 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의 비율이 주에 따라 다른데 대략 6명~36명으로 구성된다.

학교 협의회에는 각 학급의 학부모와 교사의 모임인 학급 운영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학교후원회의 대표들이 학부모 대표로써 참가한다. 또 학급후원회는 학부모 모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조직으로써 학급의 모든 학부모와 그 학급에서 정기적으로 수업하는 담당 교사로 구성된다. 학급후원회 회장은 학부모 가운데서 선출되며, 부회장은 학급 담임이 맡는다.

(4) 프랑스의 학교운영위원회

프랑스는 단일 국가의 형태를 취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교육 행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1968년 5월 혁명 이후에야 비로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시작되었다. 프랑스에서의 학부모 행동은 엄격하게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규정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는 본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하고 학급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는 몇몇 교육활동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음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학부모의 참여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사친회를 통하여만 이루어지는데, 프랑스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친회는 학부모연합회와 공교육학부모회 등이 있다.

프랑스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학교의 행정담당자, 교사, 학부모대표 뿐만 아니라, 지역대표, 유명인사, 학교대표, 기술·서비스 담당 학교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세 개 영역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학교행정가, 학교와 관련 있는 단체 조직원 (예를 들면 시청직원, 일반 기업인), 지역대표자로 구성되고, 두 번째 영역은 학교 교원 및 교의

, 보건 교사, 사서와 같은 비 교원 대표로 구성되며, 세번째 영역은 학생과 학부모대표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들 영역은 각각 총구성원의 1/3씩을 이루고 있다.

학생수가 600명이 넘는 중학교의 경우 전체위원 수는 30명인데, 그 가운데 학부모대표 7명, 학생대표가 3명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대표 5명, 학생대표5명으로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의 수준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높아질수록 학부모 대표의 수는 줄고 학생대표의 수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위원들의 성격과 숫자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프랑스의 학교행정위원회의 구성 (단위:명)

위 원	중학교 (660명 미만)	중학교 (660명 이상)	고등학교
지역선출	3	4	4
학교의 행정담당	4	5	5
유자격 유명인사	1	1	1
학부모대표	6	7	5
학생대표	2	3	5
교사	6	7	7
서비스 담당직원	2	3	3
계	24	30	30

※ 자료 : 신상명(2002), 학교단위책임경영론

지역에서 선출된 자는 시 또는 공공단체를 대표하며, 지역 대표자가 한 명 뿐인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 장학사가 학교장의 추천을 얻은 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대표, 학생대표, 학부모대표는 선거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열리고, 학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 · 진행하며, 회의 시간과 날짜는 학부모의 회의 참석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사례의 시사점

교육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시행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사례로부터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개혁의 방향을 단위학교의 ‘자율적 경영’과 ‘책임성 강화’에 두었다는 점이다. 학교장에게 학교경영의 권한 부여와 그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조직을 통해 학교경영이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의지에서 학교구조를 재편한 것으로 여러 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예에서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 활성화와 전문성 신장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직원과 학생들도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의사, 기업가, 농부, 은행관계자, 화가, 지방교육청 행정 실무자를, 프랑스는 학급 카운슬러 또는 진학지도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문제를 다 함께 풀어가려는 교육공동체 구현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셋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수요자인 학생의 권리를 인정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의 대표수를 증가시켜 참여적 의사결정체제 본질을 구현하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학교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미성숙한 학생의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하느냐에 있지만, 학교 구성원의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의 참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거부될 수 없다고 본다.

입시위주의 교육구조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학생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어려운 것이 자명한 현실이므로 심의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참관이나 진술권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일부 교원단체에 의해 학생들의 의사가 굴절되거나 잘못 반영 될 우려도 있으므로 참여는 보장하되 심의권을 주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 진다.

넷째,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교직원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우리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학교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참여시켜서, 의사결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도출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의 행정직원이나 고용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일부에선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이미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서 일부 교원단체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린 현실에서, 이러한 이유로 행정직원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

다섯째, 지역위원의 경우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가(산업체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되 선출해 준 위원들에 의해 해임되지 않음으로써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도 매우 인상 깊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재정의 자립고가 낮고 열악한 현실에서 지역사회 자본가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에서 얻는 이윤을 교육에 환원하게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표 II-2>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교

국가	구성인원	구 성 원	교장위치	학생참여	기타
미국	12~16명	교장, 교사(임시교사포함), 교직원(사무직원, 고용인포함), 학생, 지역사회인사, 학교후원 기업대표 등	상임위원	지역별로 허용	교육감이 지역대표인사 중 1인 지명, 위임임기 1년
영국	9~19명	학부모, 지역교육청 피임명자, 교사, 위원선출자, 교장	상임위원	18세 이상 가 능하나 실제적 으로 불가능	서기고용(법적 자문, 회의주 선)위원의 임 기 4년
독일	6~36명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위원장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생 대 표 수 증가	학교설립자(사 립)가 심의권 과 제안권을 가지고 참여
프랑스	24~30명	지역대표, 학교행정담당, 유명인사, 학부모, 교사, 교직원, 학생	위원장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생 대 표 수 증가	학급위원회가 중추적 역할 (상향식 의사 결정체제)

3) 선행연구의 고찰

199년 5·31 교육개혁안의 하나로 제안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그 해 9월부터 시범 설치되어 1997년 전국의 모든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설치 ·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운영의 초기에는 제도적인 규정 개선, 운영실태 분석, 관련 집단 간의 인식의 차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활성화 방안과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와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선행 연구물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물들을 고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 분석의 모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한재성(2002)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효과 분석’에서 전라남도 초 · 중등학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학교경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학교경영의 자율화, 권한의 분산 및 학교경영의 전문성 확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에, 책임경영의 측면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의 마음이 민주화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참여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은 미온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학생의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교사의 교수 · 학습 활동에서는 교사 스스로가 전문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교사가 학교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는 아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구성원의 변화에 따르면 학교장의 변화는 미온적이지만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사는 전문성, 학부모는 적극적 참여, 학생은 학교생활, 지역사회는 학교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의 변화를 가져왔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여섯 가지를 지적하여

- ①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 중 교원위원을 높여야 한다.
- ②교원위원의 선출에 능력 있는 교사가 기피하고 있다.
- ③학부모 위원선출에서 선출위원에 대한 심층적 자료 없이 선출되고 있다.
- ④지역사회 위원으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

⑤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교사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⑥심의 · 의결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점 해결보다는 학교와 학부모간 간섭 사항만을 열심히 심의 · 의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부자(2002)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성과 분석’에서 전국의 국 · 공립 초 · 중 · 고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장을 표집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운영성과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견해차 없이 대체로 심의 기구, 자문기구, 의결기구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성위원의 정수에 대한 적절성은 상위 급별의 학교로 올라갈수록 지역과 더불어 학교급 별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을 나타냈고, 구성 주체별 비율의 적절성은 대체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운영위원의 선출의 적법성에 대하여 초등에서는 운영위원 선출과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교장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중 · 소 도시에서 교원선출 방식에 ‘교장의 의도’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목하고 위원회 선출방식이 심의 과정 및 의사 결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운영과정의 활성화에 대하여 회의 절차의 공지의 적절성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회의 시간의 배정은 지역에 따라 구서우언들의 여건을 보다 달리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고 회의 참석의 열성도는 중 · 소 도시의 운영위원들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회의 공개는 교원 및 학부모를 참석시키는 공개회의로 진행되기보다는 운영위원들만이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의견 제시의 적극성에 대하여 위원들이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의견 제시는 잘 하지 않고 운영위원장이나 학교장의 의견에 대해 청취하는 자세를 취하며 안건의 심의 과정에 있어서 대체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다수결의 합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지역적 특성과 각 학교급 별의 특성 및 그에 따른 교장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회의 결과의 공개방식은 학교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정보 공개보다는 행정적 차원에서의 처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을 나타내었다.

넷째, 운영위원의 역할 수행 능력과 상호관계에 있어 학교 운영 위원회 도입 이전에는 학교의 최고 결정권자는 학교장의 몫이었다. 그러나 운영위원들도 학교 운영에 책임지게 됨으로써 전문적 지식과 함께 역할 수행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며 운영위원들 간의 상호 관계도 개방적이고 쌍방적이며 의사소통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시 ·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홍보와 연수, 행정지도,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 확대 등은 필수적 행정지원으로 지적하였다.

여섯째, 심의 사항의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초 · 중등 교육법 제 32조에서 제시한 13 개항 중에서 상위 수준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사항은 학교급식, 예 · 결산 항, 학교 발전기금 조성 · 운영 및 사용, 학교운영의 대안 제안 등이다. 심의 사항 중 지역 간 차이를 보이는 사항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초빙교원 추천, 대통령령 · 시 · 도 조례로 나타나며, 이는 획일화된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사항이 있음을 말해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석·박사논문 중 몇 개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정현웅(1998)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분석 연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취지, 구성, 기능,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인 면과 운영 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학교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학교의 자율에 맡기며, 현재 학교에서 비법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법정기구화 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위원들에게 계속적이고 광범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켜 중앙집권적, 행정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과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희진(1999)은 ‘교사와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체제가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인 학부모를 위해서 적절한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학교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나 교육을 통해 관심과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여 민주적인 운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위원회 활동의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홍보활동을 통해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황영혜(2001)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대구광역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과 운영위원회 차원의 학생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은 교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위원 정수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김동주(2002)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갈등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

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그 역할을 지각하고 수행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각 위원을 간의 갈등은 거의 없으나 일부 내부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연직 간사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은 학교 예·결산, 학교급식 등 학교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견제해야 하므로 제도상으로 정당인은 학교운영위원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홍 호(2003)는 ‘학교운영위원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헌분석을 통해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한 논문으로 위원 선출은 대체로 민주적으로 선출되나 간접선출이 많고, 운영위원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대체로 긍정하고 구성 비율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발언 시 가장 의식되는 사람으로는 학교장을 들었으며, 이러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토대로 발전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로 관심을 제고시키고 대표성 있는 운영위원을 선출해야 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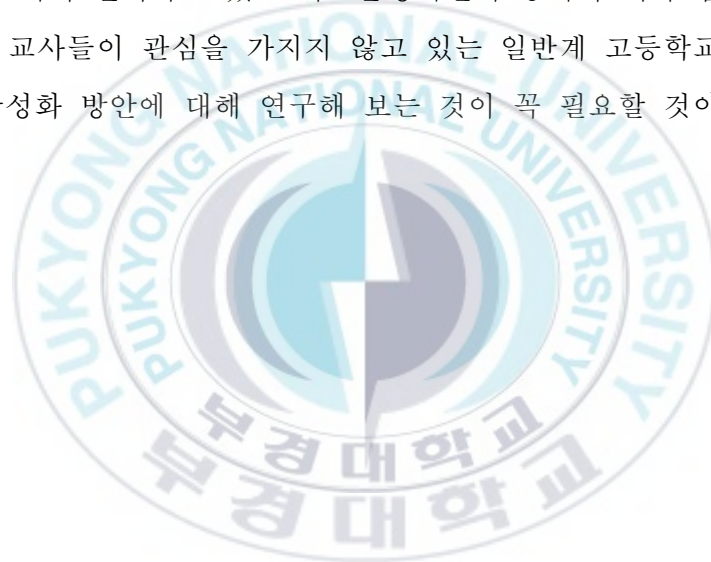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 교육 관련자 대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선호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선행연구물 대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이며 연구대상을 직접 당사자인 운영위원과 교사, 학부모로 한정된 연구가 많다. 셋째, 주로 선행연구물 대부분이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다 구체적인 문제점 도출과 함께 적절한 방안제시가 미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연구 대상을 학교운

영위원회의 교원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구범위를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참여, 운영위원의 대표성 및 전문성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성과로 운영위원회의 자율성,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의 준거 중에 민주성, 효율성, 전문성, 자율성의 순으로 인식함이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의 준거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른 영역별 분석의 필요성과 현재 단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중에서 대학 입시 지도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부산광역시 소재 일반계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 및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설립 유형별로 국·공립 고등학교 13개교와 사립 고등학교 7개교를 무선 표집 하여 학교 당 20부씩 총 400부를 배부하여 최종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처리가 가능한 360부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표 III-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배부교	회수교	대상	배부수	회수수	회수율(%)	사용부수
국·공립고	13	교사	260	249	95	249
사립고	7	교사	140	111	80	111
계	20		400	360	90	360

2. 연구의 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되는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기존의 논문을 참고하여 부산광역시 내의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 및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개발한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부산광역시 내에서 무선 표집 된 20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400부를 우편으로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설문지 구성 내용

영역	질문 내용	문항번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요건, 선출방식, 전문성	지역위원의 자격	Ⅱ-1
	교원위원의 자격	Ⅱ-2
	학부모위원의 자격	Ⅱ-3
	선거운동 기간	Ⅱ-4
	선출방법	Ⅱ-5
	전문성	Ⅱ-6
학교운영위원회 의 기능과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Ⅲ-1
	심의 결과 반영	Ⅲ-2
	권한	Ⅲ-3
	교원위원의 권한	Ⅲ-4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권한	Ⅲ-5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위원의 구성 비율	Ⅳ-1
	위원의 전문성 신장	Ⅳ-2
	의결권 부여	Ⅳ-3
	운영회의 홍보	Ⅳ-4
	구성원의 역할	Ⅳ-5
	구성원의 역할	Ⅳ-6
	심의 내용의 학교운영에 반영	Ⅳ-7
	심의 방법	Ⅳ-8
	개선 사항	Ⅳ-9
	심의 결과 공개 방법	Ⅳ-10
	관심 제고 분야	Ⅳ-11
	학교경영에 참가하는 권한	Ⅳ-12
	대표성 부여 방안	Ⅳ-13
계		24

3. 자료의 분석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교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대표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대표성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 자격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 자격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은 학교문제를 잘 해결하는 분이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에 종사한 유관 인사 30.6%, 학교 일에 후원을 해 줄 분 23.1%, 그 지역출신으로 지역 거주자 1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은 학교 문제를 잘 해결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교육에 종사한 유관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 자격은 학교문제를 잘 해결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교육에 종사한 유관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0.85$, $p<.001$). 교육경력별로는 초임기 교사일수록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은 교육에 종사한 유관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정채 및 심화기 교사일수록 학교문제를 잘 해결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1.41$, $p<.05$).

<표 IV-1>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 자격

구 분		①	②	③	④	계	$\chi^2(df)$	p
성별	남	45 (23.9)	53 (28.2)	67 (35.6)	23 (12.2)	188 (52.2)	1.31 (3)	0.726
	여	38 (22.1)	57 (33.1)	60 (34.9)	17 (9.9)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59 (23.7)	55 (22.1)	100 (40.2)	35 (14.1)	249 (69.2)	30.85*** (3)	0.000
	사립	24 (21.6)	55 (49.5)	27 (24.3)	5 (4.5)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5 (13.2)	22 (57.9)	10 (26.3)	1 (2.6)	38 (10.6)	21.41* (9)	0.011
	향상기	22 (23.4)	32 (34.0)	33 (35.1)	7 (7.4)	94 (26.1)		
	정착 및 발전기	27 (22.5)	32 (26.7)	44 (36.7)	17 (14.2)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29 (26.9)	24 (22.2)	40 (37.0)	15 (13.9)	108 (30.0)		
직급	교사	65 (23.9)	89 (32.7)	90 (33.1)	28 (10.3)	272 (75.6)	4.23 (3)	0.238
	부장교사	18 (20.5)	21 (23.9)	37 (42.0)	12 (13.6)	88 (24.4)		
참여 경험	있음	21 (20.6)	25 (24.5)	40 (39.2)	16 (15.7)	102 (28.3)	5.39 (3)	0.146
	없음	62 (24.0)	85 (32.9)	87 (33.7)	24 (9.3)	258 (71.7)		
계		83 (23.1)	110 (30.6)	127 (35.3)	40 (11.1)	360 (100.0)		

* p<.05, *** p<.001

주.1)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은 어떤 분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학교 일에 후원을 해 줄 분 _② 교육에 종사한 유관 인사
_③ 학교 문제를 잘 해결 하는 분 _④ 그 지역 출신으로 지역 거주자

이상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은 학교문제를 잘 해결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경력이 초임기 교사일수록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은 교육에 종사한 유관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나.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자격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 자격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경험이 많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사 36.7%, 비판의식이 있는 교사 22.5%, 참신한 젊은 교사 1.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은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경험이 많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1.44$, $p<.05$).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은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경험이 많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76$, $p<.01$).

교육경력별로는 초임기 교사일수록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경험이 많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정착 및 발전기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직급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경험이 많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직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험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은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는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경험이 많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5.42$, $p<.01$).

<표 IV-2>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자격

구 분		①	②	③	④	계	$\chi^2(df)$	p
성별	남	38 (20.0)	63 (33.5)	84 (44.7)	3 (1.6)	188 (52.2)	11.44* (3)	0.010
	여	43 (25.0)	79 (45.9)	48 (27.9)	2 (1.2)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59 (23.7)	84 (33.7)	101 (40.6)	5 (2.0)	249 (69.2)	12.76* (3)	0.005
	사립	22 (19.8)	58 (52.3)	31 (27.9)	-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10 (26.3)	18 (47.4)	10 (26.3)	-	38 (10.6)	11.93 (9)	0.217
	향상기	26 (27.7)	39 (41.5)	29 (30.9)	-	94 (26.1)		
	정착 및 발전기	19 (15.8)	48 (40.0)	51 (42.5)	2 (1.7)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26 (24.1)	37 (34.3)	42 (38.9)	3 (2.8)	108 (30.0)		
직급	교사	67 (24.6)	109 (40.1)	94 (34.6)	2 (0.7)	272 (75.6)	7.13 (3)	0.068
	부장교사	14 (15.9)	33 (37.5)	38 (43.2)	3 (3.4)	88 (24.4)		
참여 경험	있음	23 (22.5)	26 (25.5)	50 (49.0)	3 (2.9)	102 (28.3)	15.42* (3)	0.001
	없음	58 (22.5)	116 (45.0)	82 (31.8)	2 (0.8)	258 (71.7)		
계		81 (22.5)	142 (39.4)	132 (36.7)	5 (1.4)	360 (100.0)		

* p<.05, ** p<.01

주.2)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어떤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_① 비판 의식이 있는 교사 | _② 경험이 많은 교사 |
| _③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사 | _④ 참신한 젊은 교사 |

이상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경험이 많은 교사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자격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자격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3>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7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감시 기능을 갖춘 분 15.0%, 학교와 유대관계가 좋은 분 6.4%, 경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2.2%, 어머니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1.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는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감시 기능을 갖춘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1.32$, $p<.05$).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감시 기능을 갖춘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7.13$, $p<.001$).

교육경력별로는 향상기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감시 기능을 갖춘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정체 및 심화기 교사일수록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3.06$, $p<.05$).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는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감시 기능을 갖춘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df)	p
성별	남	17 (9.0)	34 (18.1)	129 (68.6)	2 (1.1)	6 (3.2)	188 (52.2)	11.32* (4)	0.023
	여	6 (3.5)	20 (11.6)	140 (81.4)	4 (2.3)	2 (1.2)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10 (4.0)	22 (8.8)	208 (83.5)	3 (1.2)	6 (2.4)	249 (69.2)	37.13** (4)	0.000
	사립	13 (11.7)	32 (28.8)	61 (55.0)	3 (2.7)	2 (1.8)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3 (7.9)	7 (18.4)	24 (63.2)	3 (7.9)	1 (2.6)	38 (10.6)	23.06* (12)	0.027
	향상기	5 (5.3)	22 (23.4)	65 (69.1)	-	2 (2.1)	94 (26.1)		
	정착 및 발전기	8 (6.7)	16 (13.3)	93 (77.5)	2 (1.7)	1 (0.8)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7 (6.5)	9 (8.3)	87 (80.6)	1 (0.9)	4 (3.7)	108 (30.0)		
직급	교사	16 (5.9)	43 (15.8)	201 (73.9)	6 (2.2)	6 (2.2)	272 (75.6)	2.98 (4)	0.562
	부장교사	7 (8.0)	11 (12.5)	68 (77.3)	-	2 (2.3)	88 (24.4)		
참여 경험	있음	4 (3.9)	15 (14.7)	78 (76.5)	2 (2.0)	3 (2.9)	102 (28.3)	1.83 (4)	0.767
	없음	19 (7.4)	39 (15.1)	191 (74.0)	4 (1.6)	5 (1.9)	258 (71.7)		
계		23 (6.4)	54 (15.0)	269 (74.7)	6 (1.7)	8 (2.2)	360 (100.0)		

* p<.05, *** p<.001

주.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어떤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학교와 유대관계가 좋은 분 _② 감시 기능을 갖춘 분
_③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 _④ 어머니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_⑤ 경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이상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되어야 한다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라.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시 선거운동 적정 기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시 선거운동 적정 기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4>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시 선거운동 기간은 현행 기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73.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주일 정도 연장해야 한다 15.6%, 2주일 정도 연장해야 한다 6.1%, 10일 정도 연장해야 한다 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거운동 적정기간

구 분		①	②	③	④	계	χ^2 (df)	p
성별	남	141 (75.0)	28 (14.9)	9 (4.8)	10 (5.3)	188 (52.2)	0.90 (3)	0.826
	여	122 (70.9)	28 (16.3)	10 (5.8)	12 (7.0)	172 (47.8)		
설립유형	국·공립	189 (75.9)	30 (12.0)	16 (6.4)	14 (5.6)	249 (69.2)	9.62* (3)	0.022
	사립	74 (66.7)	26 (23.4)	3 (2.7)	8 (7.2)	111 (30.8)		
교육경력	초임기	29 (76.3)	4 (10.5)	1 (2.6)	4 (10.5)	38 (10.6)	13.03 (9)	0.161
	향상기	59 (62.8)	24 (25.5)	6 (6.4)	5 (5.3)	94 (26.1)		
	정착 및 발전기	92 (76.7)	13 (10.8)	7 (5.8)	8 (6.7)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83 (76.9)	15 (13.9)	5 (4.6)	5 (4.6)	108 (30.0)		
직급	교사	202 (74.3)	42 (15.4)	14 (5.1)	14 (5.1)	272 (75.6)	1.96 (3)	0.581
	부장교사	61 (69.3)	14 (15.9)	5 (5.7)	8 (9.1)	88 (24.4)		
참여경험	있음	75 (73.5)	16 (15.7)	3 (2.9)	8 (7.8)	102 (28.3)	2.18 (3)	0.537
	없음	188 (72.9)	40 (15.5)	16 (6.2)	14 (5.4)	258 (71.7)		
계		263 (73.1)	56 (15.6)	19 (5.3)	22 (6.1)	360 (100.0)		

* $p < .05$

주.4)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시 선거운동 기간은 10일 정도입니다. 이 운동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 기간이 적당하다. ☐ ② 1주일 정도 연장해야 한다
☐ ③ 10일 정도 연장해야 한다 ☐ ④ 2주일 정도 연장해야 한다

마.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5>와 같이 학부모 위원을 학부모 대표에 의한 간접 선출을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후보자가 없이 무투표로 모두 당선 21.1%, 학부모 전체가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 10.0%, 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선출 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구 분		①	②	③	④	계	χ^2 (df)	p
성별	남	24 (12.8)	119 (63.3)	33 (17.6)	12 (6.4)	188 (52.2)	9.54 (3)	0.023
	여	12 (7.0)	96 (55.8)	43 (25.0)	21 (12.2)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30 (12.0)	144 (57.8)	62 (24.9)	13 (5.2)	249 (69.2)	23.08*** (3)	0.000
	사립	6 (5.4)	71 (64.0)	14 (12.6)	20 (18.0)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4 (10.5)	18 (47.4)	10 (26.3)	6 (15.8)	38 (10.6)	15.07 (9)	0.089
	향상기	7 (7.4)	57 (60.6)	16 (17.0)	14 (14.9)	94 (26.1)		
	정착 및 발전기	10 (8.3)	72 (60.0)	31 (25.8)	7 (5.8)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15 (13.9)	68 (63.0)	19 (17.6)	6 (5.6)	108 (30.0)		
직급	교사	24 (8.8)	157 (57.7)	61 (22.4)	30 (11.0)	272 (75.6)	7.41 (3)	0.060
	부장교사	12 (13.6)	58 (65.9)	15 (17.0)	3 (3.4)	88 (24.4)		
참여 경험	있음	13 (12.7)	57 (55.9)	25 (24.5)	7 (6.9)	102 (28.3)	3.03 (3)	0.388
	없음	23 (8.9)	158 (61.2)	51 (19.8)	26 (10.1)	258 (71.7)		
계		36 (10.0)	215 (59.7)	76 (21.1)	33 (9.2)	360 (100.0)		

*** p<.001

주.5) 귀교의 학부모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였습니까?

- _① 학부모 전체가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 _② 학부모대표에 의한 간접 선출
_③ 후보자가 없어 무투표로 모두 당선 _④ 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선출

바. 학교운영위원 중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

학교운영위원 중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6>과 같이 학교운영위원 중 교사위원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8.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장 14.4%, 학부모 위원 10.3%, 지역사회 위원 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 학교운영위원 중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

구 분		학교장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사회위원	계	χ^2 (df)	p
성별	남	29 (15.4)	125 (66.5)	20 (10.6)	14 (7.4)	188 (52.2)	1.33 (3)	0.722
	여	23 (13.4)	123 (71.5)	17 (9.9)	9 (5.2)	172 (47.8)		
설립유형	국·공립	37 (14.9)	167 (67.1)	28 (11.2)	17 (6.8)	249 (69.2)	1.46 (3)	0.691
	사립	15 (13.5)	81 (73.0)	9 (8.1)	6 (5.4)	111 (30.8)		
교육경력	초임기	6 (15.8)	27 (71.1)	2 (5.3)	3 (7.9)	38 (10.6)	8.57 (9)	0.478
	향상기	11 (11.7)	73 (77.7)	8 (8.5)	2 (2.1)	94 (26.1)		
	정착기	16 (13.3)	79 (65.8)	15 (12.5)	10 (8.3)	120 (33.3)		
	정착기 이후	19 (17.6)	69 (63.9)	12 (11.1)	8 (7.4)	108 (30.0)		
직급	교사	42 (15.4)	186 (68.4)	26 (9.6)	18 (6.6)	272 (75.6)	1.46 (3)	0.692
	부장교사	10 (11.4)	62 (70.5)	11 (12.5)	5 (5.7)	88 (24.4)		
참여경험	있음	13 (12.7)	69 (67.6)	12 (11.8)	8 (7.8)	102 (28.3)	1.09 (3)	0.779
	없음	39 (15.1)	179 (69.4)	25 (9.7)	15 (5.8)	258 (71.7)		
계		52 (14.4)	248 (68.9)	37 (10.3)	23 (6.4)	360 (100.0)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 중 교사위원이 전문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설립유형, 경력, 직급,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중 학교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살펴본 결과는 <표 IV-7>과 같이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2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19.5%,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5.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 10.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중 학교에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7>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4	2.3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94	28.7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00	19.5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3	6.1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103	10.0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0.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6	10.3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60	15.6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4	1.4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1.7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건의	38	3.7
계	1026	100.0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의 학교경영 반영 정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경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경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09$, $p<.001$). 교육경력별로는 정착 및 발전기인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8>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77로, 교사들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경영에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는 여자교사보다 학교장이 학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초임기인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01$, $p<.01$).

<표 IV-8>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의 학교경영 반영 정도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188	3.82	0.83	1.29	0.197
	여	172	3.72	0.77		
설립유형	국·공립	249	3.90	0.72	4.09***	0.000
	사립	111	3.50	0.91		
교육경력	초임기	38	3.45	0.95	5.01**	0.002
	향상기	94	3.66	0.74		
	정착 및 발전기	120	3.96	0.65		
	정체 및 심화기	108	3.78	0.90		
직 급	교사	272	3.72	0.78	-2.00*	0.046
	부장교사	88	3.92	0.85		
참여경험	있음	102	3.91	0.89	2.08*	0.038
	없음	258	3.72	0.76		
전 체		360	3.77	0.80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국·공립교사와 교육경력이 정착 및 발전기인 교사, 부장교사,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절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절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9>와 같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 25.4%, 권한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24.7%,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6.4%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였으며,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3.70$, $p<.001$). 교육경력별로는 초임기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였고, 정착 및 발전기인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직급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는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15$, $p<.05$).

<표 IV-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절성

구 분		현재의 권한이 적절하다	권한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χ^2 (df)	p
성별	남	89 (47.3)	48 (25.5)	11 (5.9)	40 (21.3)	188 (52.2)	6.35 (3)	0.096
	여	64 (37.2)	41 (23.8)	12 (7.0)	55 (32.0)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129 (51.8)	59 (23.7)	12 (4.8)	49 (19.7)	249 (69.2)	33.70* ** (3)	0.000
	사립	24 (21.6)	30 (27.0)	11 (9.9)	46 (41.4)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10 (26.3)	11 (28.9)	2 (5.3)	15 (39.5)	38 (10.6)	10.56 (9)	0.307
	향상기	34 (36.2)	25 (26.6)	8 (8.5)	27 (28.7)	94 (26.1)		
	정착 및 발전기	59 (49.2)	25 (20.8)	7 (5.8)	29 (24.2)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50 (46.3)	28 (25.9)	6 (5.6)	24 (22.2)	108 (30.0)		
직급	교사	111 (40.8)	67 (24.6)	20 (7.4)	74 (27.2)	272 (75.6)	2.65 (3)	0.448
	부장교사	42 (47.7)	22 (25.0)	3 (3.4)	21 (23.9)	88 (24.4)		
참여 경험	있음	51 (50.0)	28 (27.5)	8 (7.8)	15 (14.7)	102 (28.3)	10.15* (3)	0.017
	없음	102 (39.5)	61 (23.6)	15 (5.8)	80 (31.0)	258 (71.7)		
계		153 (42.5)	89 (24.7)	23 (6.4)	95 (26.4)	360 (100.0)		

*** p<.001, * p<.05

이상과 같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학교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향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3.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적절한 구성 비율

학교운영위원회의 적절한 구성 비율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0>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비율 축소, 교원위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 비율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현행 구성 비율이 적절하다 29.2%, 학부모위원 비율 현행 유지, 교원위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 비율 축소 13.1%, 학부모위원 비율 확대, 교원위원 비율 현행 유지, 지역위원 비율 축소 4.2%, 학부모위원 비율 축소, 교원위원 비율 현행 유지, 지역위원 비율 확대 1.7%, 학부모 위원 비율 확대, 교원위원 비율 축소, 지역위원 비율 현행 유지 1.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는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 비율은 현행 구성 비율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학부모위원 비율 축소, 교원위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 비율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 비율은 현행 구성 비율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학부모위원 비율 축소, 교원위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 비율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83$, $p<.05$).

교육경력별로는 향상기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비율 축소, 교원위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 비율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정체 및 심화기인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현행 구성 비율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육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없었다.

<표 IV-10> 학교운영위원회의 적정한 구성 비율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χ^2 (df)	p
성별	남	66 (35.1)	2 (1.1)	5 (2.7)	90 (47.9)	22 (11.7)	3 (1.6)	188 (52.2)	8.33 (5)	0.139
	여	39 (22.7)	3 (1.7)	10 (5.8)	92 (53.5)	25 (14.5)	3 (1.7)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80 (32.1)	3 (1.2)	8 (3.2)	113 (45.4)	40 (16.1)	5 (2.0)	249 (69.2)	14.83* (5)	0.011
	사립	25 (22.5)	2 (1.8)	7 (6.3)	69 (62.2)	7 (6.3)	1 (0.9)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10 (26.3)	2 (5.3)	1 (2.6)	20 (52.6)	4 (10.5)	1 (2.6)	38 (10.6)	16.24 (15)	0.367
	향상기	20 (21.3)	1 (1.1)	4 (4.3)	55 (58.5)	13 (13.8)	1 (1.1)	94 (26.1)		
	정착 및 발전기	36 (30.0)	1 (0.8)	3 (2.5)	63 (52.5)	14 (11.7)	3 (2.5)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39 (36.1)	1 (0.9)	7 (6.5)	44 (40.7)	16 (14.8)	1 (0.9)	108 (30.0)		
직급	교사	76 (27.9)	3 (1.1)	11 (4.0)	138 (50.7)	39 (14.3)	5 (1.8)	272 (75.6)	2.87 (5)	0.719
	부장교사	29 (33.0)	2 (2.3)	4 (4.5)	44 (50.0)	8 (9.1)	1 (1.1)	88 (24.4)		
참여 경험	있음	35 (34.3)	2 (2.0)	3 (2.9)	51 (50.0)	11 (10.8)	-	102 (28.3)	5.08 (5)	0.406
	없음	70 (27.1)	3 (1.2)	12 (4.7)	131 (50.8)	36 (14.0)	6 (2.3)	258 (71.7)		
계		105 (29.2)	5 (1.4)	15 (4.2)	182 (50.6)	47 (13.1)	6 (1.7)	360 (100.0)		

* $p < .05$

주.6)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40% ~ 50%, 교원위원의 비율은 30% ~ 40%, 지역위원은 10% ~ 30%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현행 구성 비율이 매우 적절하다.
- _② 학부모위원 비율 확대, 교원위원 비율 축소, 지역위원 비율 현행 유지
- _③ 학부모위원 비율 확대, 교원위원 비율 현행 유지, 지역위원 비율 축소
- _④ 학부모위원 비율 축소, 교원위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 비율 현행 유지
- _⑤ 학부모위원 비율 현행 유지, 교원위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 비율 축소
- _⑥ 학부모위원 비율 축소, 교원위원 비율 현행 유지, 지역위원 비율 확대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비율 축소, 교원위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 비율 현행 유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사립교사가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비율 축소, 교원위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 비율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나. 교원위원의 적절한 혜택 부여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원위원의 적절한 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1>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위원에게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수업 시수를 줄여준다 24.4%,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게 한다 14.2%, 인사 이동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6.7% 순으로 나타났다. ($\chi^2=16.29$, $p<.01$).

<표 IV-11> 교원위원의 적절한 혜택 부여 방안

구 분		①	②	③	④	계	χ^2 (df)	p
성별	남	44 (23.4)	113 (60.1)	9 (4.8)	22 (11.7)	188 (52.2)	6.03 (3)	0.110
	여	44 (25.6)	84 (48.8)	15 (8.7)	29 (16.9)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58 (23.3)	125 (50.2)	20 (8.0)	46 (18.5)	249 (69.2)	16.29** (3)	0.001
	사립	30 (27.0)	72 (64.9)	4 (3.6)	5 (4.5)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7 (18.4)	26 (68.4)	2 (5.3)	3 (7.9)	38 (10.6)	5.75 (9)	0.765
	향상기	22 (23.4)	53 (56.4)	6 (6.4)	13 (13.8)	94 (26.1)		
	정착 및 발전기	27 (22.5)	66 (55.0)	9 (7.5)	18 (15.0)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32 (29.6)	52 (48.1)	7 (6.5)	17 (15.7)	108 (30.0)		

직급	교사	62 (22.8)	149 (54.8)	19 (7.0)	42 (15.4)	272 (75.6)	2.69 (3)	0.443
	부장교사	26 (29.5)	48 (54.5)	5 (5.7)	9 (10.2)	88 (24.4)		
참여 경험	있음	30 (29.4)	51 (50.0)	8 (7.8)	13 (12.7)	102 (28.3)	2.52 (3)	0.473
	없음	58 (22.5)	146 (56.6)	16 (6.2)	38 (14.7)	258 (71.7)		
계		88 (24.4)	197 (54.7)	24 (6.7)	51 (14.2)	360 (100.0)		

** p<.01

주.7)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위원에게 다음 중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수업 시수를 줄여준다. _②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_③ 인사 이동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_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게 한다.

교육경력별로는 초임기 교사일수록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위원에게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정채 및 심화기인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수업 시수를 줄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급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위원에게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수업 시수를 줄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위원에게 수업 시수를 줄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는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위원에게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사가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위원에게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다.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적절한 혜택 부여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적절한 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2>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 회의 참석 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의 안건을 학부모들과 상의할 수 있게 학부모회를 조직한다 21.7%, 연수기회를 확대한다 20.8%, 학교 운영에 지역위원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다 1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는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 회의 참석 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회의 참석 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 회의 참석 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설립유형, 경력, 직급,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2>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적절한 혜택 부여 방안

구 분		①	②	③	④	계	χ^2 (df)	p
성별	남	85 (45.2)	30 (16.0)	42 (22.3)	31 (16.5)	188 (52.2)	5.84 (3)	0.120
	여	68 (39.5)	45 (26.2)	36 (20.9)	23 (13.4)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101 (40.6)	54 (21.7)	53 (21.3)	41 (16.5)	249 (69.2)	2.21 (3)	0.531
	사립	52 (46.8)	21 (18.9)	25 (22.5)	13 (11.7)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17 (44.7)	5 (13.2)	9 (23.7)	7 (18.4)	38 (10.6)	15.33 (9)	0.082
	향상기	50 (53.2)	17 (18.1)	19 (20.2)	8 (8.5)	94 (26.1)		
	정착 및 발전기	37 (30.8)	32 (26.7)	27 (22.5)	24 (20.0)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49 (45.4)	21 (19.4)	23 (21.3)	15 (13.9)	108 (30.0)		
직급	교사	114 (41.9)	60 (22.1)	60 (22.1)	38 (14.0)	272 (75.6)	1.76 (3)	0.624
	부장교사	39 (44.3)	15 (17.0)	18 (20.5)	16 (18.2)	88 (24.4)		
참여 경험	있음	43 (42.2)	21 (20.6)	24 (23.5)	14 (13.7)	102 (28.3)	0.39 (3)	0.942
	없음	110 (42.6)	54 (20.9)	54 (20.9)	40 (15.5)	258 (71.7)		
계		153 (42.5)	75 (20.8)	78 (21.7)	54 (15.0)	360 (100.0)		

주.8)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 다음 중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회의 참석 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 _②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 _③ 회의 안건을 학부모들과 상의할 수 있게 학부모회를 조직한다.
- _④ 학교 운영에 지역위원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다.

라. 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연수분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연수분야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3>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교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IV-13> 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연수분야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df)$	p
성별	남	57 (30.3)	124 (66.0)	2 (1.1)	2 (1.1)	3 (1.6)	188 (52.2)	7.37 (4)	0.117
	여	66 (38.4)	95 (55.2)	5 (2.9)	5 (2.9)	1 (0.6)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88 (35.3)	153 (61.4)	3 (1.2)	4 (1.6)	1 (0.4)	249 (69.2)	6.78 (4)	0.148
	사립	35 (31.5)	66 (59.5)	4 (3.6)	3 (2.7)	3 (2.7)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15 (39.5)	21 (55.3)	1 (2.6)	1 (2.6)	-	38 (10.6)	2.44 (12)	0.998
	향상기	31 (33.0)	58 (61.7)	2 (2.1)	2 (2.1)	1 (1.1)	94 (26.1)		
	정착 및 발전기	40 (33.3)	73 (60.8)	3 (2.5)	2 (1.7)	1 (0.9)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37 (34.3)	67 (62.0)	1 (0.9)	2 (1.9)	1 (0.9)	108 (30.0)		
직급	교사	93 (34.2)	163 (59.9)	7 (2.6)	6 (2.2)	3 (1.1)	272 (75.6)	2.81 (4)	0.591
	부장교사	30 (34.1)	56 (63.6)	-	1 (1.1)	1 (1.1)	88 (24.4)		
참여 경험	있음	22 (21.6)	77 (75.5)	1 (1.0)	1 (1.0)	1 (1.0)	102 (28.3)	13.02* (4)	0.011
	없음	101 (39.1)	142 (55.0)	6 (2.3)	6 (2.3)	3 (1.2)	258 (71.7)		
계		123 (34.2)	219 (60.8)	7 (1.9)	7 (1.9)	4 (1.1)	360 (100.0)		

* $p < .05$

주.9)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들이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 중 가장 필요한 연수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_② 학교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_③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_④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_⑤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교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교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마.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전환해야 하는 분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전환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4>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운영 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0.6%,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6.7%, 학교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6.4%,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 10.6%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 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설립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01$, $p<.001$).

직급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직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4>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전환해야 하는 분야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df)	p
성별	남	34 (18.1)	61 (32.4)	27 (14.4)	22 (11.7)	44 (23.4)	188 (52.2)	5.25 (4)	0.263
	여	25 (14.5)	68 (39.5)	33 (19.2)	16 (9.3)	30 (17.4)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39 (15.7)	75 (30.1)	50 (20.1)	24 (9.6)	61 (24.5)	249 (69.2)	20.01*** (4)	0.000
	사립	20 (18.0)	54 (48.6)	10 (9.0)	14 (12.6)	13 (11.7)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7 (18.4)	18 (47.4)	4 (10.5)	3 (7.9)	6 (15.8)	38 (10.6)	15.99 (12)	0.192
	향상기	11 (11.7)	38 (40.4)	22 (23.4)	6 (6.4)	17 (18.1)	94 (26.1)		
	정착 및 발전기	26 (21.7)	36 (30.0)	17 (14.2)	17 (14.2)	24 (20.0)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15 (13.9)	37 (34.3)	17 (15.7)	12 (11.1)	27 (25.0)	108 (30.0)		
직급	교사	42 (15.4)	94 (34.6)	49 (18.0)	28 (10.3)	59 (21.7)	272 (75.6)	3.10 (4)	0.542
	부장교사	17 (19.3)	35 (39.8)	11 (12.5)	10 (11.4)	15 (17.0)	88 (24.4)		
참여 경험	있음	15 (14.7)	37 (36.3)	15 (14.7)	11 (10.8)	24 (23.5)	102 (28.3)	1.20 (4)	0.878
	없음	44 (17.1)	92 (35.7)	45 (17.4)	27 (10.5)	50 (19.4)	258 (71.7)		
계		59 (16.4)	129 (35.8)	60 (16.7)	38 (10.6)	74 (20.6)	360 (100.0)		

*** p<.001

주.10)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우선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분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③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④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⑤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이상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바. 학부모 및 교사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 제고 방안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 학부모 및 교사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 제고 방안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5>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및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24.4%로 가장 많았으며, 교무회의에서 연수를 실시한다 23.9%, 교육청에서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 한다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5> 학부모 및 교사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 제고 방안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df)$	p
성별	남	40 (21.3)	26 (13.8)	43 (22.9)	43 (22.9)	36 (19.1)	188 (52.2)	9.99* (4)	0.041
	여	25 (14.5)	39 (22.7)	45 (26.2)	43 (25.0)	20 (11.6)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46 (18.5)	34 (13.7)	66 (26.5)	63 (25.3)	40 (16.1)	249 (69.2)	10.95* (4)	0.027
	사립	19 (17.1)	31 (27.9)	22 (19.8)	23 (20.7)	16 (14.4)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6 (15.8)	9 (23.7)	11 (28.9)	5 (13.2)	7 (18.4)	38 (10.6)	15.98 (12)	0.192
	향상기	16 (17.0)	25 (26.6)	23 (24.5)	18 (19.1)	12 (12.8)	94 (26.1)		
	정착 및 발전기	25 (20.8)	11 (9.2)	29 (24.2)	35 (29.2)	20 (16.7)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18 (16.7)	20 (18.5)	25 (23.1)	28 (25.9)	17 (15.7)	108 (30.0)		
직급	교사	51 (18.8)	50 (18.4)	69 (25.4)	58 (21.3)	44 (16.2)	272 (75.6)	4.09 (4)	0.394
	부장교사	14 (15.9)	15 (17.0)	19 (21.6)	28 (31.8)	12 (13.6)	88 (24.4)		
참여 경험	있음	16 (15.7)	21 (20.6)	24 (23.5)	27 (26.5)	14 (13.7)	102 (28.3)	1.70 (4)	0.791
	없음	49 (19.0)	44 (17.1)	64 (24.8)	59 (22.9)	42 (16.3)	258 (71.7)		
계		65 (18.1)	65 (18.1)	88 (24.4)	86 (23.9)	56 (15.6)	360 (100.0)		

* $p < .056$.

주.11)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교육청에서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 _② 교육청에서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 _③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한다.
- _④ 교무회의에서 연수를 실시한다.
- _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한다.

교육경력별로는 초임기 교사일수록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 학부모 및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정작 및 발전기인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교무회의에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직급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 학부모 및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교무회의에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직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 학부모 및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무회의에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는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 학부모 및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여자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 학부모 및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사.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구성원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구성원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6>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위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장 29.7%, 학부모 위원 10.3%, 위원장 5.6%, 지역위원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6>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구성원

구 분		위원장	학교장	교원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	계	χ^2 (df)	p
성별	남	10 (5.3)	61 (32.4)	100 (53.2)	14 (7.4)	3 (1.6)	188 (52.2)	4.92 (4)	0.295
	여	10 (5.8)	46 (26.7)	92 (53.5)	23 (13.4)	1 (0.6)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12 (4.8)	72 (28.9)	130 (52.2)	32 (12.9)	3 (1.2)	249 (69.2)	6.42 (4)	0.170
	사립	8 (7.2)	35 (31.5)	62 (55.9)	5 (4.5)	1 (0.9)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3 (7.9)	7 (18.4)	26 (68.4)	2 (5.3)	-	38 (10.6)	11.44 (12)	0.492
	향상기	4 (4.3)	27 (28.7)	54 (57.4)	9 (9.6)	-	94 (26.1)		
	정착 및 발전기	7 (5.8)	36 (30.0)	64 (53.3)	11 (9.2)	2 (1.7)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6 (5.6)	37 (34.3)	48 (44.4)	15 (13.9)	2 (1.9)	108 (30.0)		
직급	교사	12 (4.4)	83 (30.5)	147 (54.0)	28 (10.3)	2 (0.7)	272 (75.6)	4.38 (4)	0.358
	부장교사	8 (9.1)	24 (27.3)	45 (51.1)	9 (10.2)	2 (2.3)	88 (24.4)		
참여 경험	있음	3 (2.9)	30 (29.4)	51 (50.0)	15 (14.7)	3 (2.9)	102 (28.3)	9.06 (4)	0.060
	없음	17 (6.6)	77 (29.8)	141 (54.7)	22 (8.5)	1 (0.4)	258 (71.7)		
계		20 (5.6)	107 (29.7)	192 (53.3)	37 (10.3)	4 (1.1)	360 (100.0)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위원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설립유형, 경력, 직급,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 안전 심의에 대한 논의의 주도적 역할 구성원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 심의에 대한 논의의 주도적 역할 구성원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7>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 심의에 대한 논의는 교원위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위원장과 학부모 위원이 각각 11.4%, 학교장 7.8%, 지역위원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안전 심의에 대한 논의의 주도적 역할 구성원

구 분		위원장	학교장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계	χ^2 (df)	p
성별	남	22 (11.7)	15 (8.0)	125 (66.5)	23 (12.2)	3 (1.6)	188 (52.2)	1.33 (4)	0.856
	여	19 (11.0)	13 (7.6)	121 (70.3)	18 (10.5)	1 (0.6)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30 (12.0)	14 (5.6)	168 (67.5)	34 (13.7)	3 (1.2)	249 (69.2)	8.92 (4)	0.063
	사립	11 (9.9)	14 (12.6)	78 (70.3)	7 (6.3)	1 (0.9)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3 (7.9)	4 (10.5)	27 (71.1)	4 (10.5)	-	38 (10.6)	18.40 (12)	0.104
	향상기	14 (14.9)	8 (8.5)	66 (70.2)	6 (6.4)	-	94 (26.1)		
	정착 및 발전기	8 (6.7)	10 (8.3)	84 (70.0)	14 (11.7)	4 (3.3)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16 (14.8)	6 (5.6)	69 (63.9)	17 (15.7)	-	108 (30.0)		
직급	교사	33 (12.1)	20 (7.4)	191 (70.2)	27 (9.9)	1 (0.4)	272 (75.6)	9.00 (4)	0.061
	부장교사	8 (9.1)	8 (9.1)	55 (62.5)	14 (15.9)	3 (3.4)	88 (24.4)		
참여 경험	있음	10 (9.8)	7 (6.9)	66 (64.7)	18 (17.6)	1 (1.0)	102 (28.3)	5.66 (4)	0.226
	없음	31 (12.0)	21 (8.1)	180 (69.8)	23 (8.9)	3 (1.2)	258 (71.7)		
계		41 (11.4)	28 (7.8)	246 (68.3)	41 (11.4)	4 (1.1)	360 (100.0)		

교육경력별로는 초임기 교사일수록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 심의에 대한 논의는 교원위원 한다고 인식하였고, 정제 및 심화기인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학부모 위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직급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 심의에 대한 논의는 교원위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학부모 위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직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는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 심의에 대한 논의는 학부모 위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는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교원위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 심의에 대한 논의는 교원위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설립유형, 경력, 직급,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정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정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8>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학교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7.5%,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야 한대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가 각각 6.7%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학교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사립학교 교사가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3.08$, $p<.01$). 교육경력별로는 향상기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학교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고 인식하였고, 정착 및 발전기인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74$, $p<.05$).

<표 IV-18>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정도

구 분		①	②	③	④	계	χ^2 (df)	p
성별	남	79 (42.0)	88 (46.8)	10 (5.3)	11 (5.9)	188 (52.2)	4.05 (3)	0.256
	여	56 (32.6)	89 (51.7)	14 (8.1)	13 (7.6)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98 (39.4)	127 (51.0)	9 (3.6)	15 (6.0)	249 (69.2)	13.08** (3)	0.004
	사립	37 (33.3)	50 (45.0)	15 (13.5)	9 (8.1)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10 (26.3)	19 (50.0)	5 (13.2)	4 (10.5)	38 (10.6)	20.74* (9)	0.014
	향상기	31 (33.0)	51 (54.3)	6 (6.4)	6 (6.4)	94 (26.1)		
	정착 및 발전기	59 (49.2)	53 (44.2)	1 (0.8)	7 (5.8)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35 (32.4)	54 (50.0)	12 (11.1)	7 (6.5)	108 (30.0)		
직급	교사	99 (36.4)	135 (49.6)	21 (7.7)	17 (6.3)	272 (75.6)	2.55 (3)	0.466
	부장교사	36 (40.9)	42 (47.7)	3 (3.4)	7 (8.0)	88 (24.4)		
참여 경험	있음	46 (45.1)	41 (40.2)	7 (6.9)	8 (7.8)	102 (28.3)	4.82 (3)	0.185
	없음	89 (34.5)	136 (52.7)	17 (6.6)	16 (6.2)	258 (71.7)		
계		135 (37.5)	177 (49.2)	24 (6.7)	24 (6.7)	360 (100.0)		

* $p<.05$, ** $p<.01$

주.9.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학교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_② 학교 현실에 맞게 반영되어야 한다.
_③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_④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직급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학교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는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학교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학교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학교 교사와 교육경력에 향상이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학교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차. 안전 처리 및 심의 방식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 처리 및 심의 방식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9>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 처리 및 심의는 다수결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 27.5%, 소위원회 구성 10.6%, 만장일치로 처리 6.1%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 처리 및 심의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다수결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육경력별로는 정착 및 발전기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 처리 및 심의 방식은 다

수결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정채 및 심화기인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육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9> 안전 처리 및 심의 방식

구 분		만장일치 로 처리	다수결로 처리	소위원회 구성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	계	χ^2 (df)	p
성별	남	11 (5.9)	115 (61.2)	15 (8.0)	47 (25.0)	188 (52.2)	5.42 (3)	0.143
	여	11 (6.4)	86 (50.0)	23 (13.4)	52 (30.2)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14 (5.6)	132 (53.0)	27 (10.8)	76 (30.5)	249 (69.2)	4.21 (3)	0.239
	사립	8 (7.2)	69 (62.2)	11 (9.9)	23 (20.7)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1 (2.6)	22 (57.9)	4 (10.5)	11 (28.9)	38 (10.6)	15.40 (9)	0.081
	향상기	11 (11.7)	50 (53.2)	7 (7.4)	26 (27.7)	94 (26.1)		
	정착 및 발전기	6 (5.0)	77 (64.2)	11 (9.2)	26 (21.7)	120 (33.3)		
	정채 및 심화기	4 (3.7)	52 (48.1)	16 (14.8)	36 (33.3)	108 (30.0)		
직급	교사	18 (6.6)	154 (56.6)	29 (10.7)	71 (26.1)	272 (75.6)	1.39 (3)	0.708
	부장교사	4 (4.5)	47 (53.4)	9 (10.2)	28 (31.8)	88 (24.4)		
참여 경험	있음	6 (5.9)	54 (52.9)	12 (11.8)	30 (29.4)	102 (28.3)	0.61 (3)	0.894
	없음	16 (6.2)	147 (57.0)	26 (10.1)	69 (26.7)	258 (71.7)		
계		22 (6.1)	201 (55.8)	38 (10.6)	99 (27.5)	360 (100.0)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 처리 및 심의 방식은 다수결 처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설립유형, 경력, 직급,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0>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되어야 인식하는 교사가 3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장의 의식 변화 29.2%, 교원의 참여도 제고 27.8%, 교육청의 간섭 축소 1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0>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구 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원의 참여도 제고	교육청의 간섭 축소	학교장의 의식 변화	계	χ^2 (df)	p
성별	남	62 (33.0)	45 (23.9)	29 (15.4)	52 (27.7)	188 (52.2)	7.48 (3)	0.058
	여	51 (29.7)	55 (32.0)	13 (7.6)	53 (30.8)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79 (31.7)	68 (27.3)	32 (12.9)	70 (28.1)	249 (69.2)	1.37 (3)	0.712
	사립	34 (30.6)	32 (28.8)	10 (9.0)	35 (31.5)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18 (47.4)	7 (18.4)	4 (10.5)	9 (23.7)	38 (10.6)	11.49 (9)	0.244
	향상기	24 (25.5)	30 (31.9)	13 (13.8)	27 (28.7)	94 (26.1)		
	정착 및 발전기	35 (29.2)	38 (31.7)	9 (7.5)	38 (31.7)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36 (33.3)	25 (23.1)	16 (14.8)	31 (28.7)	108 (30.0)		
직급	교사	79 (29.0)	73 (26.8)	31 (11.4)	89 (32.7)	272 (75.6)	7.19 (3)	0.066
	부장교사	34 (38.6)	27 (30.7)	11 (12.5)	16 (18.2)	88 (24.4)		
참여 경험	있음	33 (32.4)	27 (26.5)	14 (13.7)	28 (27.5)	102 (28.3)	0.79 (3)	0.852
	없음	80 (31.0)	73 (28.3)	28 (10.9)	77 (29.8)	258 (71.7)		
계		113 (31.4)	100 (27.8)	42 (11.7)	105 (29.2)	360 (100.0)		

직급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장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직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는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학교장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설립유형, 경력, 직급,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타. 안전의 심의 결과 공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의 심의 결과 공개 방법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1>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의 심의 결과 공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의록 공개 22.2%, 학교 소식지를 통한 공개 18.6%, 가정 통신문 발송 17.2%, 교무위원회를 통한 공개 12.8%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로는 초임기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의 심의 결과 공개는 학교 소식지를 통한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정채 및 심화기 교사일수록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0.83$, $p<.01$).

(28.7)	(9.3)	(10.2)	(34.3)	(17.6)	(30.0)		
59	50	50	80	33	272		
(21.7)	(18.4)	(18.4)	(29.4)	(12.1)	(75.6)	1.43	
21	17	12	25	13	88	(4)	
(23.9)	(19.3)	(13.6)	(28.4)	(14.8)	(24.4)		
24	17	14	35	12	102		
(23.5)	(16.7)	(13.7)	(34.3)	(11.8)	(28.3)	2.82	
56	50	48	70	34	258	(4)	
(21.7)	(19.4)	(18.6)	(27.1)	(13.2)	(71.7)		
80	67	62	105	46	360		
(22.2)	(18.6)	(17.2)	(29.2)	(12.8)	(100.0)		

(28.7)	(9.3)	(10.2)	(34.3)	(17.6)	(30.0)		
59	50	50	80	33	272		
(21.7)	(18.4)	(18.4)	(29.4)	(12.1)	(75.6)	1.43	
21	17	12	25	13	88	(4)	
(23.9)	(19.3)	(13.6)	(28.4)	(14.8)	(24.4)		
24	17	14	35	12	102		
(23.5)	(16.7)	(13.7)	(34.3)	(11.8)	(28.3)	2.82	
56	50	48	70	34	258	(4)	
(21.7)	(19.4)	(18.6)	(27.1)	(13.2)	(71.7)		
80	67	62	105	46	360		
(22.2)	(18.6)	(17.2)	(29.2)	(12.8)	(100.0)		

**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건의 심의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공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② 학교 소식지를 통한 공개
 _④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의 심의
의지를 통한 공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수록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
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

파.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2>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IV-22>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χ^2 (df)	p
성별	남	27 (14.4)	106 (56.4)	32 (17.0)	5 (2.7)	18 (9.6)	188 (52.2)	3.44 (4)	0.488
	여	21 (12.2)	94 (54.7)	40 (23.3)	6 (3.5)	11 (6.4)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38 (15.3)	130 (52.2)	56 (22.5)	9 (3.6)	16 (6.4)	249 (69.2)	9.87* (4)	0.043
	사립	10 (9.0)	70 (63.1)	16 (14.4)	2 (1.8)	13 (11.7)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5 (13.2)	22 (57.9)	5 (13.2)	2 (5.3)	4 (10.5)	38 (10.6)	14.78 (12)	0.254
	향상기	17 (18.1)	54 (57.4)	17 (18.1)	3 (3.2)	3 (3.2)	94 (26.1)		
	정착 및 발전기	11 (9.2)	64 (53.3)	33 (27.5)	3 (2.5)	9 (7.5)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15 (13.9)	60 (55.6)	17 (15.7)	3 (2.8)	13 (12.0)	108 (30.0)		
직급	교사	37 (13.6)	147 (54.0)	58 (21.3)	10 (3.7)	20 (7.4)	272 (75.6)	3.58 (4)	0.466
	부장교사	11 (12.5)	53 (60.2)	14 (15.9)	1 (1.1)	9 (10.2)	88 (24.4)		
참여 경험	있음	11 (10.8)	59 (57.8)	17 (16.7)	-	15 (14.7)	102 (28.3)	13.78** (4)	0.008
	없음	37 (14.3)	141 (54.7)	55 (21.3)	11 (4.3)	14 (5.4)	258 (71.7)		
계		48 (13.3)	200 (55.6)	72 (20.0)	11 (3.1)	29 (8.1)	360 (100.0)		

* $p < .05$, ** $p < .01$

주.13.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_① 운영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_② 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
_③ 비(非)위원의 의사 수렴과정 확대 _④ 이해 집단의 갈등과 대립
_⑤ 일반 학부모와 일반 교사의 의식 및 태도변화

직급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위원의 의사 수렴과정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교사보다 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는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비위원의 의사 수렴과정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3.78, p<.01$).

이상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사립학교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하. 운영위원회의 학교 경영 참가 권한 부여 정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학교 경영 참가 권한 부여 정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3>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학교 경영 참가 권한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안에 따라 의결권 부여 26.4%, 심의권 14.4%, 자문권 7.2%, 지도·감독권 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는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학교 경영 참가 권한은 사안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학교 경영 참가 권한은 사안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73$, $p<.01$).

<표 IV-23> 운영위원회의 학교 경영 참가 권한 부여 정도

구 분		심의권	의결권	자문권	사안에 따라 의결권 부여	지도· 감독권	계	χ^2 (df)	p
성별	남	32 (17.0)	90 (47.9)	11 (5.9)	50 (26.6)	5 (2.7)	188 (52.2)	3.08 (4)	0.545
	여	20 (11.6)	88 (51.2)	15 (8.7)	45 (26.2)	4 (2.3)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39 (15.7)	107 (43.0)	20 (8.0)	77 (30.9)	6 (2.4)	249 (69.2)	14.73** (4)	0.005
	사립	13 (11.7)	71 (64.0)	6 (5.4)	18 (16.2)	3 (2.7)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7 (18.4)	21 (55.3)	-	10 (26.3)	-	38 (10.6)	18.07 (12)	0.114
	향상기	7 (7.4)	55 (58.5)	8 (8.5)	21 (22.3)	3 (3.2)	94 (26.1)		
	정착 및 발전기	14 (11.7)	55 (45.8)	11 (9.2)	37 (30.8)	3 (2.5)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24 (22.2)	47 (43.5)	7 (6.5)	27 (25.0)	3 (2.8)	108 (30.0)		
직급	교사	36 (13.2)	134 (49.3)	22 (8.1)	71 (26.1)	9 (3.3)	272 (75.6)	5.24 (4)	0.264
	부장교사	16 (18.2)	44 (50.0)	4 (4.5)	24 (27.3)	-	88 (24.4)		
참여 경험	있음	17 (16.7)	54 (52.9)	4 (3.9)	24 (23.5)	3 (2.9)	102 (28.3)	3.54 (4)	0.472
	없음	35 (13.6)	124 (48.1)	22 (8.5)	71 (27.5)	6 (2.3)	258 (71.7)		
계		52 (14.4)	178 (49.4)	26 (7.2)	95 (26.4)	9 (2.5)	360 (100.0)		

** $p<.01$

직급별로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학교 경영 참가 권한은 자문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부장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험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학교 경영 참가 권한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는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사안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학교 경영 참가 권한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사가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학교 경영 참가 권한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거. 운영위원들의 대표성 부여 방안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의 대표성 부여 방안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4>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원위원은 교무 업무 분장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영위원을 전체 교무회의에서 인준 18.3%,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18.1%, 운영위원 선출 시 홍보 강화 1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운영위원들의 대표성 부여 방안

구 분		①	②	③	④	계	χ^2 (df)	p
성별	남	30 (16.0)	86 (45.7)	33 (17.6)	39 (20.7)	188 (52.2)	1.56 (3)	0.668
	여	28 (16.3)	85 (49.4)	32 (18.6)	27 (15.7)	172 (47.8)		
설립 유형	국·공립	51 (20.5)	107 (43.0)	52 (20.9)	39 (15.7)	249 (69.2)	19.78*** (3)	0.000
	사립	7 (6.3)	64 (57.7)	13 (11.7)	27 (24.3)	111 (30.8)		
교육 경력	초임기	4 (10.5)	22 (57.9)	9 (23.7)	3 (7.9)	38 (10.6)	13.09 (9)	0.159
	향상기	10 (10.6)	52 (55.3)	15 (16.0)	17 (18.1)	94 (26.1)		
	정착 및 발전기	20 (16.7)	50 (41.7)	25 (20.8)	25 (20.8)	120 (33.3)		
	정체 및 심화기	24 (22.2)	47 (43.5)	16 (14.8)	21 (19.4)	108 (30.0)		
직급	교사	43 (15.8)	125 (46.0)	50 (18.4)	54 (19.9)	272 (75.6)	2.09 (3)	0.554
	부장교사	15 (17.0)	46 (52.3)	15 (17.0)	12 (13.6)	88 (24.4)		
참여 경험	있음	24 (23.5)	53 (52.0)	14 (13.7)	11 (10.8)	102 (28.3)	11.36* (3)	0.010
	없음	34 (13.2)	118 (45.7)	51 (19.8)	55 (21.3)	258 (71.7)		
계		58 (16.1)	171 (47.5)	65 (18.1)	66 (18.3)	360 (100.0)		

* $p < .05$, *** $p < .001$

주.15.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운영위원 선출시 홍보 강화 _② 교원위원은 교무업무 분장에 편성
 _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_④ 운영위원을 전체 교무회의에서 인준

성별로는 남자교사는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위원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을 전체 교무회의에서 인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교원위원은 교무 업무 분장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교원위원은 교무 업무 분장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9.78, p<.001$).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가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원위원은 교무 업무 분장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없는 교사는 참여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운영위원을 전체 교무회의에서 인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1.36, p<.05$).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원위원은 교무 업무 분장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사립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원위원은 교무 업무 분장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단위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운영 성과에 대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차이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연구 문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선출방식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권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 논문과 문헌을 중심으로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본 연구자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개발한 24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20개 학교(국·공립 및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에, 400부(각 학교당 2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360부를 본 연구의 조사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교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대표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원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지역위원은 현재의 비율이 적당하며 학부모위원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위원의 자격은 학교문제를 잘 해결하는 분, 교육에 종사한 유관 인사, 학교 일에 후원을 해 줄 분 등의 순이었고, 교원위원은 경험이 많은 교사,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사, 비판 의식이 있는 교사의 순이었으며, 학부모위원은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 학교와 유대가 좋은 분, 경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의 순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운영위원 중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으로는 교사위원이 68.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학교장,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의 순이었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관심이 높은 항목은 학교의 예산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 지원금의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순이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는 5점 만점에 3.77점으로 학교장이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현재가 적절하다, 잘 모르겠다, 확대해야 한다, 축소해야 한다의 순이었습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위원은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방안,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게 한다, 인사이동시 가산점 부여 등이었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회의 참석 시 일정액의 수당 지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위원, 전문성 신장이 가장 필요한 위원은 교사위원이라고 인식했으며, 안전 심의 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위원도 교사위원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안전 처리 방식은 다수결 처리,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 소위원회 구성, 만장일치 처리의 순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 비위원의 의사수렴과정 확대, 운영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일반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태도변화를 꼽았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안전은 학교홈페

이지를 통한 공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회의록 공개, 학교소식지, 가정통신문 발송의 순이었습니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 중 의결기능으로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항목은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금의 조성 및 운영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순이었습니다.

2. 결론

연구 결과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대표성 및 전문성에 대해서는 교원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은 학교 일을 잘 이해하는 분이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원위원은 교육경험이 많은 분이 좋다고 인식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은 현재가 적절하다고 인식 하였으나 현재 심의 기능으로 된 사항들 중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교 급식에 관한사항 등은 의결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고, 교원위원의 경우는 업무분장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위원이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전문성을 신장하기위해 많은 연수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은 회의 참석 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일반계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사 및 학부모,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한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무섭 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1995.
- 강인수 외.교육법론. 교육행정학 전문서 8. 서울:도서출판 하우.1995.
-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1996.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교육부.1998.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1998.
- 김동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갈등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2002.
- 김부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성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2002.
- 김휘진. “교사와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인하교육대학교.1999.
- 남정걸 외. 교육조직론. 서울:도서출판 하우.1995.
-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교육과학사.2005.
- 노재원. “학교운영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학부모의 요구분석”,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1996.
- 박도순. 교육연구 방법론. 도서출판 문음사.2001.
- 신상명.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과제 탐색.” 『교육행정학 연구』. 제 18권 제 1호,2000.
- 신선철.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건강 진단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2003.

- 신정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의견 분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1996.
- 이경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들간의 인식차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2002.
- 이종승. 교육연구법. 배영사.2004.
- 양계숙.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1999.
- 양승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저해 요인과 효능화 방안.” 『교육이론과 실제』.2000.
- 윤보매.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태와 개선에 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2000.
- 이공건.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1996.
- 이돈희. 『학교공동체의 협동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중앙교육심의회. 1994.
- 정태범. 『학교교육의 구조적 개혁』. 서울:양서원.1998.
- 정현웅.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1998.
- 조금주. “NGO활동을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교육사회학 연구 Sociology of Education 제 10권 제 1호.2000. pp. 75~98
- 조미영.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1999.
- 진동섭.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과 자질.” 『교육월보』.

1995.

최장명.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인대학교.1998.

최재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학교. 1997.

최희선. “학교경영개혁에서의 교장의 역할과 책무.” 제 10회 한국·일본교육행정학회 공동세미나 자료.2003.

한국교육행정학회. 학교·학급 경영론. 서울:한국교육행정학회.1995.

한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2002.

홍경희.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2001.

홍관식. 『학교단위책임경영』, 도서출판 서경.1999.

홍 호. “학교운영위원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2003.

안녕하십니까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설문지는 95년부터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재 단위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응답 내용은 오로지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가지신 생각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안 효 덕

1. 성별 _ ① 남 _ ② 여

2. 설립유형 _ ① 국·공립고 _ ② 사립고

3. 교육경력 _ ① 초임기(5년 미만) _ ② 향상기(5년 ~ 15년)
 _ ③ 정착 및 발전기(15년 ~ 25년)
 _ ④ 정체 및 심화기(25년이상)

5.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경험 - ① 있음 - ② 없음

II. 다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대표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은 어떤 분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학교 일에 후원을 해 줄 분 ☐ ② 교육에 종사한 유관 인사
☐ ③ 학교 문제를 잘 해결 하는 분 ☐ ④ 그 지역 출신으로 지역 거주자

2.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어떤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비판 의식이 있는 교사 ☐ ② 경험이 많은 교사
☐ ③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사 ☐ ④ 참신한 젊은 교사

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어떤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학교와 유대관계가 좋은 분 ☐ ② 감시 기능을 갖춘 분
☐ ③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 ☐ ④ 어머니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 ⑤ 경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4.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시 선거운동 기간은 10일 정도입니다. 이 운동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 기간이 적당하다. ☐ ② 1주일 정도 연장해야 한다
☐ ③ 10일 정도 연장해야 한다 ☐ ④ 2주일 정도 연장해야 한다

5. 귀교의 학부모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였습니까?

- ☐ ① 학부모 전체가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 ☐ ② 학부모대표에 의한 간접 선출
☐ ③ 후보자가 없어 무투표로 모두 당선 ☐ ④ 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선출

6. 학교운영위원 중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위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학교장 ☐ ② 교사위원
☐ ③ 학부모위원 ☐ ④ 지역사회위원

III. 다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중에서 귀교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3개의 번호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_ 1)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_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_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_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_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_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_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_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_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_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_ 11)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건의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 ②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
☐ ⑤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3.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의 권한이 적절하다. ☐ ② 권한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 ③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VI.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40% ~ 50%, 교원위원의 비율은 30%~40%, 지역위원은 10% ~ 30%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 구성 비율이 매우 적절하다.
☐ ② 학부모위원 비율 확대, 교원위원 비율 축소, 지역위원 비율 현행 유지
☐ ③ 학부모위원 비율 확대, 교원위원 비율 현행 유지, 지역위원 비율 축소
☐ ④ 학부모위원 비율 축소, 교원위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 비율 현행 유지
☐ ⑤ 학부모위원 비율 현행 유지, 교원위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 비율 축소
☐ ⑥ 학부모위원 비율 축소, 교원위원 비율 현행 유지, 지역위원 비율 확대
☐ ⑦ 학부모위원 비율 현행 유지, 교원위원 비율 축소, 지역위원 비율 확대

2.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위원에게 다음 중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수업 시수를 줄여준다. _②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_③ 인사 이동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_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게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 다음 중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회의 참석 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_②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_③ 회의 안건을 학부모들과 상의할 수 있게 학부모회를 조직한다.
_④ 학교 운영에 지역위원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들이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 중 가장 필요한 연수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_② 학교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_③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_④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_⑤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우선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분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_②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_③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_④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_⑤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교육청에서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 _② 교육청에서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 _③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한다.
- _④ 교무회의에서 연수를 실시한다.
- _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한다.

7.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느 구성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위원장 _② 학교장 _③ 교원위원
- _④ 학부모위원 _⑤ 지역위원

8.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 심의에 대한 논의는 어느 구성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위원장 _② 학교장 _③ 교원위원
- _④ 학부모위원 _⑤ 지역위원

9.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학교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_② 학교 현실에 맞게 반영되어야 한다.
- _③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_④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10.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 처리 및 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만장일치로 처리 _② 다수결로 처리
- _③ 소위원회 구성 _④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

11.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② 교원의 참여도 제고
☐ ③ 교육청의 간섭 축소 ☐ ④ 학교장의 의식 변화

12.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건의 심의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회의록 공개 ☐ ② 학교 소식지를 통한 공개
☐ ③ 가정통신문 발송 ☐ ④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⑤ 교무위원회를 통한 공개

13.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운영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 ② 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
☐ ③ 비(非)위원의 의사 수렴과정 확대 ☐ ④ 이해 집단의 갈등과 대립
☐ ⑤ 일반 학부모와 일반 교사의 의식 및 태도변화

14.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학교 경영에 참가하는 권한은 어느 선까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심의권 ☐ ② 의결권 ☐ ③ 자문권
☐ ④ 사안에 따라 의결권 부여 ☐ ⑤ 지도·감독권

15.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운영위원 선출시 홍보 강화 ☐ ② 교원위원은 교무업무 분장에 편성
☐ 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 ④ 운영위원을 전체 교무회의에서 인준